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771 자동차세면제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 및 2016. 6. 7.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합계 769,220원, 지방교육세 합계 230,62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1)]

1) 2017.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사건 처분일자가 '2016 6. 2.'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중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의 부과일자는 2016. 6. 7.이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등의 부과일자는 2016. 6. 2.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애 3급인 원고와 그 아들인 B은 2008. 2. 28. 배기량 1,998cc인 '로체'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였다.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redacted]시 C'(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에 원고를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나. 이후 B은 2013. 9. 25. 원고와 세대를 분리하여 '광명시 D'에 B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고, 2013. 10. 1.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와 세대합가를 하지는 않은 채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 3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중 B과의 세대분리기간인 2013. 9. 25.부터 2016. 6. 30.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합계 769,220원, 지방교육세 합계 230,6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B이 2013. 9. 25. 타지역에 전출하여 원고와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2013. 10. 1.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원고와 주소지만 같으면 세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합가를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전출입신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세대합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와 B의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redacted]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법령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B이 2013. 9. 25. 원고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한 이래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세대를 함께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위 자동차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다. 한편 전출입신고 담당 공무원이 B에게 원고와 주소지만 같으면 세대합가를 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않아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출입신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무원의 안내는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고, 원고와 B이 실제로 세대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등록표상 세대합가를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B이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주민등록상 원고와 B의 세대가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1-22

〈표〉 자동차세 부과 · 고지 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과세내역		
	합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합계	999,840	769,120	230,720
2013.9.25~2013.12.31	103,750	79,810	23,940
2014.1.1~2014.12.31	376,620	289,710	86,910
2015.1.1~2015.12.31	350,640	269,730	80,910
2016.1.1~2016. 6.30	168,830	129,870	38,960